

1.약관명: 대출거래약정서(주택도시기금대출 : 가계용)

2.시행일: 2024.12.02.

3.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: 미적용

## 주택도시기금대출 약정서 일부개정 전후 대비표

개정 전	개정 후	비고						
<p>제 1조 거래조건</p> <p>대출이자율 신생아특례버팀목전세자금대출</p> <p>연소득 7.5천만원 초과 : 대출접수일 기준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(신규취급액 기준)와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(기금대출 전국 수탁은행)의 전세자금대출 최저금리(신규취급액 기준)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.</p> <p>이자 및 지연배상금 계산방법</p> <p>※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의 월세금대출에 대한 이자는 회차별 실행금액 중 2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계산 하고,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실행금액 중 5,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계산합니다</p>	<p>제 1조 거래조건</p> <p>대출이자율 신생아특례버팀목전세자금대출</p> <p>연소득 7.5천만원 초과 : 대출접수일 기준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(신규취급액 기준)와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(기금대출 전국 수탁은행)의 전세자금대출 최저금리(신규취급액 기준)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. 단, 가장 작은 값이 소득구간별 하한금리* 이하인 경우 소득구간별 하한금리 값을 적용.</p> <p>* 소득구간별 하한금리</p> <table border="1"><thead><tr><th>연소득</th><th>하한금리</th></tr></thead><tbody><tr><td>1.3억원 이하</td><td>연소득 7.5천만원 이하 특례금리 종료 후 금리의 최고금리</td></tr><tr><td>1.3억원 초과</td><td>기 적용 특례금리에 0.2%p 가산한 금리</td></tr></tbody></table> <p>이자 및 지연배상금 계산방법</p> <p>※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의 월세금대출에 대한 이자는 회차별 실행금액 중 2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계산하고,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실행금액 중 5,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계산합니다.</p>	연소득	하한금리	1.3억원 이하	연소득 7.5천만원 이하 특례금리 종료 후 금리의 최고금리	1.3억원 초과	기 적용 특례금리에 0.2%p 가산한 금리	<p>신생아 특례대출 특례금리 종료 후 적용금리 변경에 따른 내용 반영</p> <p>상품명 수정</p>
연소득	하한금리							
1.3억원 이하	연소득 7.5천만원 이하 특례금리 종료 후 금리의 최고금리							
1.3억원 초과	기 적용 특례금리에 0.2%p 가산한 금리							

개정 전	개정 후	비 고
<p>제6조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등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 신 설 &gt;</p>	<p>제6조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등</p> <p>9. 혼인신고 없이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은 후 본인 또는 세대원,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부모가 본건 대출 외 기금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</p>	<p>신생아 특례대출 기금중복대출 검증 대상자 확대</p>

개정 전	개정 후	비 고
<p><b>제7조 무주택 등에 대한 특약사항</b></p> <p>① 「주택법」 및 「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」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본인 및 세대원 전원(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자녀, 결혼예정배우자 포함)(이하 “세대원”), 본인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민법상 미성년 형제·자매(이하 “미성년 형제·자매”)의 무주택, 기금중복대출여부 또는 소득 확인을 위하여 행정전산망 이용에 동의합니다.</p> <p>② 본인 및 세대원 전원, 미성년 형제·자매가 「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」에 따라[<input type="checkbox"/> 생애최초 <input type="checkbox"/> 신청일로부터 5년이상 <input type="checkbox"/> 신청일 현재] 무주택자임을 확인합니다.</p> <p>③ 제2항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또는 주택도시기금 전(월)세자금, 오피스텔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후에 본인 또는 세대원, 미성년 형제·자매가 주택을 취득하 경우본인은 당연히 해당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.</p>	<p><b>제7조 무주택 등에 대한 특약사항</b></p> <p>① 「주택법」 및 「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」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본인 및 세대원, 본인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민법상 미성년형제·자매(이하 “미성년 형제·자매”)의 무주택, 기금중복대출여부 또는 소득 확인을 위하여 행정전산망 이용에 동의합니다. 단, <b>혼인신고 없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한 경우 본인 및 세대원, 미성년 형제·자매,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의 무주택, 기금중복대출여부 또는 소득 확인을 위하여 행정전산망을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</b></p> <p>② 본인 및 세대원, 미성년 형제·자매, <b>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가</b> 「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」에 따라 [<input type="checkbox"/> 생애최초 <input type="checkbox"/> 신청일로부터 5년이상 <input type="checkbox"/> 신청일 현재] 무주택자임을 확인합니다.</p> <p>③ 제2항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또는 주택도시기금 전(월)세자금,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후에 본인 또는 세대원, 미성년 형제·자매, <b>신생아의 가족관계 증명서상 부모가</b>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본인은 당연히 해당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.</p>	<p>신생아 특례대출 추가주택 취득 및 기금중복대출 검증 대상자 확대에 따른 내용 반영</p>

개정 전	개정 후	비 고
<p>제10조 기한연장</p> <p>② 전세자금(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, 전세 피해 임차인 버팀목(대환 포함),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은 제외) 기한연장시에는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직전 연장 시 잔액의 10%를 상환하기로 하되 10%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0.2% 가산금리를 적용하기로 합니다. 또한, 3회차 연장 시부터 기한연장 시점 소득을기준으로금리를재산정하고,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 기한연장 시점 임차보증금 기준의 최고금리에서 0.3% 가산금리를 적용하기로 합니다.</p>	<p>제10조 기한연장</p> <p>② 전세자금(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,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(대환 포함), 전세 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은 제외) 기한연장시에는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 시 잔액의 10%를 상환하기로 하되 10%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0.2% 가산금리를 적용하기로 합니다. 또한, 3회차 연장 시부터 기한연장 시점 소득을 기준으로 금리를 재산정하고,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 기한연장 시점 임차보증금 기준의 최고금리에서 0.3% 가산금리를 적용하기로 합니다.</p>	<p>상품명 수정</p>

개정 전	개정 후	비 고
<p>제13조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대출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 신 설 &gt;</p> <p>- 고객 고지 사항-</p> <p>2. 위 약정서 제6조 및 제7조, 기타 특약사항을 위반하여 기한이익상실 되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일로부터 3년 간 주택도시기금 구입 및 전·월세 대출 이용이 제한됩니다.</p>	<p>제13조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대출</p> <p>①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대출 이용 중 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“전세사기특별법” 제2조제5호의 전세사기피해주택(이하 “전세사기피해주택”)의 임차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,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을 우선 상환하기로 합니다.</p> <p>② 전세사기피해주택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,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본인은 당연히 해당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.</p> <p>③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대출을 받은 후 전세사기특별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이 취소 또는 철회됨이 확인되는 즉시 본 대출금액 전부를 상환하거나 대출금리에 3%p 가산 적용하기로 합니다.</p> <p>-고객 고지 사항-</p> <p>2. 위 약정서 제6조 및 제7조, <b>제13조</b>, 기타 특약사항을 위반하여 기한이익상실 되는 경우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 간 주택도시기금 구입 및 전·월세 대출 이용이 제한됩니다.</p>	<p>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</p>